

심사보고서

의안명	송파구 보훈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435호
심사일자	2026. 6. 16.



위원장 신영재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송파구 보훈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435
------	-----

2026년 6월 16일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6. 5. 28. 송파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6. 6. 1.
다. 상정일자: 2026. 6. 16. 제332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강복순 복지돌봄과장)

가. 제안이유

-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와 복지 증진 및 보훈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송파구 보훈회관의 위탁기간이 2026. 9. 30.에 만료됨에 따라,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보훈 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해 관련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시설개요

- 시설명 : 송파구 보훈회관
- 소재지 : 송파구 성내천로 306(마천동)
- 규모 : 대지 422㎡, 연면적 755.65㎡(지하1층, 지상3층)
 - 운영인력 : 3명[보훈회관 운영협의회 회장, 사무, 시설관리]
 - 시설 및 위치도



2) 위탁내용

- 위탁기간: 2026. 10. 1. ~ 2029. 9. 30.(3년)
 - 위탁사무: 송파구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
 - 수탁자 선정방법: 수의계약
 - 민간위탁 필요성
 - 보훈단체의 육성·발전과 보훈대상자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증진을 위해 조성된 보훈회관은 관내 9개 보훈단체가 입주해 있는 시설로서, 시설의 특수성과 운영의 자율성 보장이 중요함
 - 입주단체 간 협의체인 보훈회관 운영협의회에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 중심의 자율적 운영과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운영예산: 연간 96,750천원(구비, '26년 기준)
- 3)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26. 5.19.)

4) 향후계획

- 수탁자 선정 구의회 서면보고 '26. 6.
- 위·수탁 협약체결 '26. 7.

다. 참고사항

1) 관련법규

-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운영 및 관리) 및 제9조(협약체결 등)

2) 소요예산

- 운영예산은 전액 구비(복지돌봄과,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보훈단체지원, 보훈회관 운영 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진미숙)

- 송파구 보훈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 2026년 5월 28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고
의안번호 제435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 송파구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관련 사무를 재위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임.
-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 ▶ **송파구 보훈회관**(송파구 성내천로 306, 지하1~지상3층)의 운영사무를 위·수탁 체결일로부터 **3년간** 보훈회관 운영협의회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 ▶ 송파구 보훈회관의 민간위탁 사무는 구비 5천만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제2항 제2호에 해당함에 따라 제4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해야 하는 대상임.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는 지난 2026년 5월 19일 진행되었음.

○본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 송파구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 기간 만료 도래 전,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림.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전정 위원

- 경영평가서에 따르면, 보훈회관에 프로그램 운영 등이 전혀 없고, 단순한 거점 역할에 머무르는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개선 방안은?

【답변】 강복순 복지돌봄과장

- 보훈회관은 9개 보훈단체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보훈단체 회원분들이 고령으로 프로그램, 네트워크 등에 대한 제약이 있는 실정임. 어르신들 맞춤형 건강프로그램 등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해보겠음.

【질의】 나봉숙 위원

- 방문해보면 소수의 분들만 계시던데, 어떤 거점 역할을 하는지?

【답변】 강복순 복지돌봄과장

- 국가지원사업 등에 대한 안내, 어려운 국가유공자 방문, 1주일에 2번 정도 경로식당 운영 등을 통해 단체간 네트워크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질의】 김성호 위원

- 보훈회관 건물이 노후화되었고, 공간이 협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확대 이전 계획은?

【답변】 강복순 복지돌봄과장

- 9개 단체가 이전할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실정임.

5. 심사결과: 원안가결